

부산광역시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45
----------	----

제출일자 : 2001. 12. 4

제출자 : 사하구청장

1. 제안사유

쓰레기무단투기와 불법소각 행위에 대한 신고 활성화 및 주민의 청결유지책임제 도입을 위한 환경부의 지침에 따라 쓰레기 불법투기·소각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액 상한선을 설정하는 한편, 주민의 청결유지 책무·이행명령 등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함

2. 주요골자

- 가. 쓰레기 무단투기와 불법소각 행위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신고포상금의 지급 기준을 조례로써 설정하고, 사안별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(안 제18조의3 제1항)
- 나. 쓰레기 불법투기·소각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기간은 증거력 확보와 사실확인 및 소재 파악 등이 가능하도록 불법행위 적발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한정함 (안 제18조의3 제2항)
- 다. 구청장이 청결유지조치를 명하는 경우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내에서 이행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(안 제18조의5 제1항)
- 라. 청결유지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를 대청소 미실시, 쓰레기 방치, 무단 소각 등 구체적으로 명시함 (안 제18조의5 제2항)
- 마. 음식물쓰레기수집·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의 분리 제정에 따라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함(안 제8조제1항 및 제2항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폐기물관리법, 과태료 부과·징수업무에 관한 규정(환경부
예규 제204호), 환경부 「청결유지책임제 시행지침」
- 나. 예산조치 : 1,000만원 기면성(2001년 예산)
- 다. 합의사항 : 해당없음
- 라. 입법예고 : 2001. 11. 10 ~ 11. 29(주민 제출의견 없음)

부산광역시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부산광역시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 제1항 중 “제4조 제2호 및 제6조, 제7조”를 “제6조 및 제7조”로 하며 동조 제2항 중 “제4조 제2호 및 제6조”를 “제6조”로 한다.

제18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8조의3(청결포상금) ① 구청장은 쓰레기를 무단투기 또는 불법소각 등 불법 처리행위신고로 피신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신고자에게 청결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 이 경우 청결포상금은 과태료부과금액의 80%이내로 하며, 사안별 포상금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은 투기행위 적발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.

제18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8조의4(청결유지 책무) 토지 · 건물의 소유자 · 점유자 또는 관리자(이하 “소유자”라 한다)는 그가 소유 · 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 · 건물의 청결을 유지토록 하여야 하며,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.

제18조의5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8조의5(청결유지 조치) ① 구청장은 토지 · 건물의 소유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내에서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. 다만,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개월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
2. 토지 · 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해손하는 행위
3. 토지 · 건물에서 기구 · 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, 노천 소각하는 행위
- 4.. 기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

③ 제1항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처분과 다시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 조문 대비 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8조(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) ① 구청장은 폐기물배출자가 제4조제2호 및 제6조,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당해 폐기물의 종류별 수거일, 수거장소 등을 해당지역 주민에게 안내문을 제작·배포하는 등 지역주민의 폐기물배출이 적정하게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</p> <p>② 구청장은 배출자가 제4조제2호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.</p> <p>제18조의3(청결포상금) 구청장은 쓰레기무단투기 등 불법행위 신고로 피신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고자에게 청결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</p>	<p>제8조(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) ① 제6조 및 제7조</p> <p>② 제6조</p> <p>제18조의3(청결포상금) ① 구청장은 쓰레기률 무단투기 또는 불법소각 등 불법처리행위신고로 피신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신고자에게 청결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 이 경우 청결포상금은 과태료부과 금액의 80%이내로 하며, 사안별 포상금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.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은 특기행위 적발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.</p>

현 행	개 정 안
<p><u>제18조의4(청결명령) ①</u> 구청장은 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의 청결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토지·건물에 대하여는 대청소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, 토지·건물의 소유자·점유자 또는 관리자(이하 "소유자"라고 한다)는 대청소계획에 따라 청소를 실시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.</p> <p><u>②</u> 소유자가 제1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구청장은 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청결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.</p> <p><u>③</u> 제2항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환경부예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.</p>	<p><u>제18조의4(청결유지 책무) 토지·건물의 소유자·점유자 또는 관리자(이하 "소유자"라 한다)는 그가 소유·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·건물의 청결을 유지토록 하여야 하며,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.</u></p>
<p><u><신설></u></p>	<p><u>제18조의5(청결유지 조치) ①</u> 구청장은 토지·건물의 소유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내에서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. 다만,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개월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.</p> <p><u>②</u>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

현 행	개 정 안
	<p>1.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 하는 행위</p> <p>2. 토지 · 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</p> <p>3. 토지 · 건물에서 기구 · 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, 노천 소각하는 행위</p> <p>4.. 기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</p> <p>③ 제1항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처분과 다시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.</p>